

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15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14일 · 종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4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5. 3. 21) 상정 · 보류
 - 제162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재무건설위원회(2006. 6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연수)

가. 제안이유

- 그동안 물품·용역 및 공사 등 입찰시 건당 5,000원씩 징수해 오던 입찰수수료가 전자입찰 실시(2001.10.1)로 입찰에 대한 공무원의 역무제공이 미미하여 중앙부서 및 협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폐지 건의가 있어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던 수수료 5,000원을 폐지함(안 별표2 나항 제7호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김 충 식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